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법률 제21085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2. 12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0000호, 2025. 00. 00. 공포, 2025. 00. 0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위 개정 내용이 의무위반 통지서의 적용법조에 반영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보건복지부,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00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의무위반사실 통보서

(00-0000-0000)

제 0000-00000 호

수 신:

제 목: 의무위반사실 통보

다음 사람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,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무위반자	성 명			
	주민등록번호	-	(	세)
	주 소			
의무위반사실	일 시	년	월	일 시 분
	장 소			
	내 용			
적용법조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2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,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3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4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4의2호) []상담 및 교육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5호) []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6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5호) []사회봉사·수강명령(법 제36조제1항제4호) []보호관찰(법 제36조제1항제5호) []감호위탁(법 제36조제1항제6호) []치료위탁(법 제36조제1항제7호) []상담위탁(법 제36조제1항제8호)		
통보인 인적사항	성 명		소 속	
	전 화 번 호		직 급	

소속:

사법경찰관리(상담원 등)

(서명 또는 인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455